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2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10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.7.1.시행한 조직 개편 사항과 빗공해 업무,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 증가하는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(안 제2조)
 - 정원의 총수 '1,378명'을 '1,387명'으로 개정(증 9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'1,351명'을 '1,360명'으로 개정(증 9명)

- 정원의 직급별 정원포 개정(별표 3)
 - 총계 '1,378명'을 '1,387명'으로 개정(증 9명)
 - 일반직 총계 '1,373명'을 '1,382명'으로 개정(증 9명)
 - 일반직 6급 이하 '1,301명'을 '1,310명'으로 개정(증 9명)
-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변경(별표 2)
 -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

구 분	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변경 전	비율	0% 이내	30% 이내	55% 이내	15% 이상	
변경 후	비율	25% 이내	37.5% 이내	25% 이내	12.5% 이상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민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 영역의 확대와 행정 수요의 다변화에 발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,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,378명에서 1,38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- 인력이 필요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,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」 제7조의2가 2016.7.28. 시행되어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등 시·도지사의 업무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 되어, 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며,
- 행정자치부의 「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」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, C형 간염, 콜레라 등에 대한 보건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 대

응을 위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하여야 하며,

- 2016.7.1. 조직개편에 따른 다문화지원과 신설 등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이며,
- 현행 「기준인건비제」(2014.3.5.시행)는 정원 한도는 두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함.
- 또한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영등포구에 제시한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총 1,167억 원이고,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총 1,078억 원(기준인건비의 92.4%수준)이며,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3억 2천만 원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별다른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.
- 그 밖에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(별표2)을 현행에 맞게 일반직과 복수로 책정된 정원도 포함하여 조정하였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6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0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.7.1일자로 시행한 조직 개편 사항과 빚공해 업무,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 증가하는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인력 확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 조정 내역

- 6급 이하 일반직 9명 순증

나. 정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
- ‘1,378명’을 ‘1,387명’으로 개정(증 9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‘1,351명’을 ‘1,360명’으로 개정(증 9명)
 -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7명

다.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(별표 3)

- 총계 ‘1,378명’을 ‘1,387명’으로 개정(증 9명)
 - 일반직 총계 ‘1,373명’을 ‘1,382명’으로 개정(증 9명)
 - 일반직 6급 이하 ‘1,301명’을 ‘1,310명’으로 개정(증 9명)

라.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변경(별표 2)

-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

구분	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변경 전	비율	0% 이내	30% 이내	55% 이내	15% 이상	
변경 후	비율	25% 이내	37.5% 이내	25% 이내	12.5% 이상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, 제22조, 제29조, 제30조

나. 예산조치

-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(9급 3호봉 기준 2017년 연간 소요 예산) 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재원	비고
6급 이하 9명	320	구비 320	구비 100%

다. 합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심사 실시(의견 없음)
- 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 실시(의견 없음)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실시(의견 없음)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6.09.13. ~ 2016.10.04,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378명”을 “1,38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351명”을 “1,36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 율	25% 이내	37.5% 이내	25% 이내	12.5% 이상	

비 고 :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직급별						
총 계		<u>1,387</u>	<u>1,387</u>	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<u>1,382</u>	<u>1,382</u>			
일 반 직	3급	1	1	-	-	-
	4급	7	5	1	1	-
	5급	62	31	2	11	18
	6급 이하	<u>1,310</u>	<u>1,310</u>			
	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378명</u>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351명</u> 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387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360명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별정직

구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율	<u>0%이내</u>	<u>30%이내</u>	<u>55%이내</u>	<u>15% 이상</u>	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개 정 안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별정직

구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율	<u>25%이내</u>	<u>37.5%이내</u>	<u>25%이내</u>	<u>12.5% 이상</u>	

비 고 :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등
총 계		1,378	1,378	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373	1,373			
일반 직	3급	1	1			
	4급	7	5	1	1	
	5급	62	31	2	11	18
	6급이하 소계	1,301	1,301			
	전문경력관 소계	2	2			
별정직 계	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등
총 계		1,387	1,387	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382	1,382			
일반 직	3급	1	1			
	4급	7	5	1	1	
	5급	62	31	2	11	18
	6급이하 소계	1,310	1,310			
	전문경력관 소계	2	2			
별정직 계	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내역 : 세출예산 순증가 (인건비)
 - 정원규칙 별표 : 정원의 총수는 '1,378명'을 '1,387명'으로 변경
2. 비용추계 기준 : 일반직 신규 임용 인건비(9급 3호봉 기준)
 - 채용인원 : 9명(공채 9명)
 - 비용추계기간 : 12개월(2017.1.~12월)
 - 비용추계내역 : 기본급+직급보조비+국민건강보험금+연금부담금+수당
3. 비용추계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금 액	산 출 근 거
합 계	320,750	
기본급(봉급)	164,245	1,476,500원×1.03×9명×12월 = 164,245천원
직급보조비	11,340	105,000원×9명×12월= 11,340천원
국민건강 보험금	8,728	- 건강보험료 8,192천원 - 장기요양보험료 536천원
연금부담금 등	42,103	- 연금부담금 31,367천원 - 퇴직수당부담금 10,388천원 - 재해보상부담금 348천원
수 당	94,334	- 육아휴직수당 2,948천원 - 가족수당 6,030천원 - 자녀학비보조수당 2,511천원 - 시간외근무수당 46,619천원 - 정액급식비 14,040천원 - 명절휴가비 16,424천원 - 연가보상비 4,562천원 - 사회복지업무수당 1,200천원

4.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	구비		320,750	339,989	360,389	382,012	404,933	1,808,073
	소계(a)							
세출	인건비(보수)		269,919	286,114	303,281	321,478	340,767	1,521,559
	보험료+연금 (사용자분)		50,831	53,875	57,108	60,534	64,166	286,514
	소계(b)		320,750	339,989	360,389	382,012	404,933	1,808,073
□ 총 비용(a-b)								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6개월분)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국비	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						
	세외수입							
	지방채 등							
민간								
기타(구비)			320,750	339,989	360,389	382,012	404,933	1,808,073
합계			320,750	339,989	360,389	382,012	404,933	1,808,073

6. 추가의견

- 국비, 시비의 보조 없는 인력 충원이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정원 충원임
- 우리 구의 특색 있는 행정 분야 및 증가하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증원이 필요함.

7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국 총무과 이정왜
연락처	02-2670-3323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